

조성토지 등(□ 토지 □ 건축물)의 임차신청서

※ □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0일		
신청인	① 성명			② 생년월일		
	③ 주소			전화번호		
④ 임차 희망지	소재지 (잠정 지번)	지목	임차면적 (㎡)	임차기간	㎡당 임차료 (원)	임차 총액 (원)
⑤ 신청자격	[] 영농조합법인 [] 영어조합법인 [] 농업회사법인 [] 어업회사법인 [] 지방자치단체 [] 한국농어촌공사 [] 농업협동조합 [] 수산업협동조합 [] 산림조합					
⑥ 임대목적						
사용개시 연월일						

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
□ 토지 □ 건축물의 임차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

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 안내

제출 및 처리기관	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
작성방법	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.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,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. ④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적습니다. ⑤ 신청자격 -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: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있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,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 -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: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있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,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 - 한국농어촌공사: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- 농업협동조합: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- 수산업협동조합: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- 산림조합: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⑥ 임대목적: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를 적습니다(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저장·유통시설 단지,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, 시험·연구 및 교육·훈련 시설 등)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